

의료관광 복수 (C-3-3)

발급대상

특정질병이 있는 것이 명백하고 복수로 입국할 필요성이 있는 자

- 최초 복수 발급대상자는 "입국목적별 구비서류 안내" 중 복수사증 대상으로 그 해당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 복수 의료사증으로 방문 경력이 있는 자는 국내 치료 기록이 분명한 경우

※ 국내 불법취업 의심 되는 경우는 제한

사증 종류 (유효기간/체류기간)

- 복수: 1년, 3년, 5년 / 30일
- 3년 복수사증: 1년 복수사증 소지자로 2회 이상 방한경력이 있고 체류실태가 건전한 자
- 5년 복수사증: 3년 복수사증 소지자로 체류실태가 건전한 자

※ 3년, 5년 복수사증신청은 소지하고 있는 복수사증 만료일 전 1개월부터 신청 가능 (예시: 2022.01.31 만료인 경우, 2022.01.01부터 신청 가능)

진단서 등에 30일 이상의 체류가 필요한 환자

신청인 구비 서류
1. 초청장, 진료예약증, 국내병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환자유치기관확인서 사본
2. 비자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 사진
3. 여권/여권사본 1매
4. 혼인관계증명서 (사증신청일 기준 45일 이내 발급)
5. 몽골지정병원 진단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서에 30일 이상의 체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확인되어야 함.
<p>※ 의료서류(진단서, 소견서 등) 발급 몽골 지정병원 : 국립외상센터, 국립암센터, 제1, 제2, 제3 종합병원, 인터메드 병원, 그랜드메드 병원, UB송도 병원</p>
6. 경제력 입증 자료 및 재직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 납세증명서 (분기 납세액 40만 투그릭 이상, 회사 대표 임명 6개월 후 신청 가능) • 직장인 :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6개월간 매월 사회보험증 상 기준급여가 100만 투그릭 이상) • 기 타 : 사증신청일 기준 최소 6개월간 유지된 본인명의의 은행거래 내역서(공동명의 불가)('19.9.16. 시행)
<p>※ 은행거래내역서는 요약본을 제출함</p> <p>※ 상기 경제력 입증 자료가, 대한민국 병원의 통상적인 치료비 및 격리 기간 등을 포함하는 체류 비용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함</p>